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5 선고 2024가단1006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헌

담당변호사 김정열, 정영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은영

변론 종결2024. 10. 8.

판결 선고2024. 11. 5.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2. 8.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년 금 제1013호로 공탁된 공탁금에 관하여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

- 1) C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공유자이다. C은 별지2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들(이하 '소회 회사들'이라고만 합니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 2) 위 각 금융기관들은 D기금 지원 협약에 근거한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C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고,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2023. 4. 3., 2023. 5. 24.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24. 1. 11.기준 C에 대한 원고의 채권액은 136,753,388원(= 원금 115,722,736원 + 미수이자금 20,967,787원 + 미수가지급금 62,865원)이다.

나. 사해행위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22. 8.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접수 제37153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무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분이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97,333,000원에 불과한 반면, 당시 C은 E에게 채무 담보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상태였던 점(경매절차에서 E은 원금 50,000,000원, 이자 13,870,000원을 배당받았다), C은 당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

1)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2 기재 각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도 불구하고 피고만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

3)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C의 위각 금융기관 대출에 앞서 피고는 2015. 5. 28.부터 2021. 3. 30.까지 179,690,000원을 C에게 대여하고 100,000,000원만을 변제받았을 뿐이어서 이자 등을 포함하면 100,000,000원 이상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피고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추심 및 신용조사를 의뢰하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피고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사해행위를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서야 원고가 F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고 채권양도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에게 채권자들의 권리가 이전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이어 이 사건 지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2023. 4. 3.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G), ② 위 경매절차에서 2024. 4. 18. 매각을 원인으로 제3자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③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31,091,511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카단101344 결정에 따른 피고 배당금 채권 가압류로 대한민국이 위 배당금 및 이자를 공탁한 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년 금제1013호)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주진오

별지